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3(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4(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재기획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소방방재본부의 기금담당사무원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조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로 하고,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647호(1999.7.3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867호(2001.6.15)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초과현원중 2002년 7월 31일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26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 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234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
----------	-----

2003년 2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3.2.17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가. 개정이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